

의안번호	2203508
의 퇴 인	윤호중 의원
회 답 일	2023. 11. 12.
추 계 번호	24G34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 인상 등에 따라, 소득세는 2025년 1.9조원, 2029년 2.2조원 등 향후 5년간 총 10.6조원(연평균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안 제52조제4항)	-1,488	-1,665	-1,863	-2,084	-2,332	-9,431	-1,886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액 인상(안 제59조의2제1항)	-17,374	-13,410	-11,459	-11,619	-11,782	-65,644	-13,129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 인상 (안 제59조의4제3항)	-	-7,874	-7,760	-7,647	-7,536	-30,817	-7,704
계	-18,862	-22,949	-21,082	-21,350	-21,650	-105,892	-21,178

주: 각 항목별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존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비과세소득)	○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 (현행) 출산·육아지원금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 (개정안)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삭제 <table><tr><td></td><td colspan="2">비과세 한도</td></tr><tr><td></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출산지원금</td><td rowspan="2">월 20만원</td><td>한도 삭제</td></tr><tr><td>육아지원금</td><td>좌 동 (월 20만원)</td></tr></table>		비과세 한도			현행	개정안	출산지원금	월 20만원	한도 삭제	육아지원금	좌 동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현행	개정안												
출산지원금	월 20만원	한도 삭제												
육아지원금		좌 동 (월 20만원)												
2	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제4항) － (현행) 소득공제율 40%, 연간 공제한도 400만원* － (개정안) 소득공제율 60%, 연간 공제한도 800만원												

		<table><tr><td rowspan="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td><td></td><td>현행</td><td>개정안</td></tr><tr><td>공제율</td><td>40%</td><td>60%</td></tr><tr><td></td><td>공제한도</td><td>400만원</td><td>800만원</td></tr></table> ○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종합 한도액을 2배로 확대 (제5항) － (현행) 종합 한도액 = Min(①, ②) ① Min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 40%, 4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5년 이상) ② 800만원 * *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600~2,000만원 － (개정안) 종합 한도액 = Min(①, ②) ① Min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 40%, 8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5년 이상) ② 1,600만원 * *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1,200~4,0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현행	개정안	공제율	40%	60%		공제한도	400만원	8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현행		개정안										
	공제율	40%	60%											
	공제한도	400만원	800만원											
3	안 제59조의2제1항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액 인상 － (현행) 8세 이상 20세 이하 손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 (개정안) 20세 이하 손자녀, 1명 연 35만원, 2명 연 70만원, 3명 이상 75만원+ 2명초과 1명당 50만원 <table><tr><th>구 분</th><th>현행</th><th>개정안</th></tr><tr><td>대 상</td><td>8세 이상 20세 이하 손자녀</td><td>20세 이하 손자녀</td></tr><tr><td>공제액</td><td>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td><td>1명: 연 35만원 2명: 연 75만원 3명 이상: 연 75만원 + 2명 초과 1명당 50만원</td></tr></table>	구 분	현행	개정안	대 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손자녀	20세 이하 손자녀	공제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1명: 연 35만원 2명: 연 75만원 3명 이상: 연 75만원 + 2명 초과 1명당 50만원			
구 분	현행	개정안												
대 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손자녀	20세 이하 손자녀												
공제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1명: 연 35만원 2명: 연 75만원 3명 이상: 연 75만원 + 2명 초과 1명당 50만원												
4	안 제59조의4제3항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 －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 30%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비과세소득)	×	향후 기업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지원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2	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특별소득공제)	○	개정안 중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종합 한도를 인상하는 내용은 개별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액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동 추계에서 제외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하는 내용만 추계
3	안 제59조의2제1항(자녀세액공제)	○	
4	안 제59조의4제3항(특별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52조제4항)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산출

○ 법안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2025년 신고분(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2022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액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율 및 한도 확대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후, 향후 2019~2021년 결정세액 있는 자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 연평균 증가율(11.9%)에 따라 세수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총급여 규모별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율 인상 전/후의 1인당 과세표준에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결정세액 감소분을 산출한 후, 공제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2022년 기준 세수감소분 추계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나.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액 인상(안 제59조의2제1항)

-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어,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법안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2025년 신고분(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징수 기준으로 조정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모두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세수가 2025년 전액 납부되는 것으로 전제(단,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세수 중 일부*가 2025년에 납부되는 것으로 전제)
 - * 근로소득세의 2025년 세수효과는 간이세액표 개정('25.2월 예정) 이후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단,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수가 차년도 확정신고시에만 반영)
- 자녀세액공제 범위 확대에 따른 대상인원 수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 신청대상 인원을 기반으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 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수를 기반으로 6세 이하 자녀 포함한 가구를 보정하여 추정
 - 2019년 이후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7세 이상으로 제한됨에 따라,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수를 기반으로 6세 이하 자녀 포함한 가구를 보정
-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인원수 추정치에 1인당 세수효과를 곱해 최종 세수효과를 추계
 - 2022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국세통계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

- 2022년 기준 세수효과 추계 후,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세액공제금액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
 - 2022년 이후 세수효과는 제도변화가 없었던 2020~2022년 연평균 증가율(근로소득세 1.2%, 종합소득세 2.1%)을 따를 것으로 가정
 - 근로소득세는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자녀세액공제액 증가율 사용

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 인상(안 제59조의4제3항)

- 개정안의 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함
 - 개정안이 2024년 하반기에 의결될 경우 2025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이 되어 2026년 연말정산부터 감면효과가 발생(징수 기준)
-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52조제4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 개요) 무주택 세대주¹⁾인 근로소득자가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해당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대상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 이하)²⁾
 - (공제한도) 주택청약(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 공제금액 = $\text{Min}\{(\text{주택청약(마련)저축 납입액} + \text{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times 40\%, 400\text{만원}\}$

1)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공제실적) 2017~2022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인원은 연평균 15.3%, 소득공제액은 연평균 16.3% 증가

- 전체 공제액을 대상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1인당 공제액은 2017~2022년 연평균 0.9% 증가

[표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인원 및 소득공제액: 2017~2022년

(단위: 명,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7~'22년 연평균 증감률
인원	5,256	6,238	7,663	8,934	10,267	10,692	15.3
공제액	8,181	9,841	11,876	13,151	14,606	17,434	16.3
1인당 공제액(백만원)	1.56	1.58	1.55	1.47	1.42	1.63	0.9

주: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포함한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년 귀속 기준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적용자(83.5만명) 중 주택청약(마련)저축 공제 적용자는 24.3%(20.3만명) 수준이며, 1인당 공제금액은 총급여 구간별로 1.25~3.80백만원 수준

[표 3]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현황(2022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 구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공제인원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 ¹⁾		1인당 공제금액 ²⁾
			공제인원	공제금액	
총 계	834,927	1,696,894	203,153	83,445	2.03
1천만원 이하	—	—	—	—	—
1.5천만원 이하	7	9	0	0	1.25
2천만원 이하	1,441	1,688	222	59	1.34
3천만원 이하	59,609	86,471	11,919	4,157	1.73
4천만원 이하	143,594	204,105	44,707	17,217	1.89
4.5천만원 이하	93,219	148,706	33,039	13,451	2.25
5천만원 이하	92,000	166,469	32,345	13,503	2.56
6천만원 이하	149,963	310,124	50,196	21,497	2.89
8천만원 이하	158,593	383,796	30,694	13,548	2.89
1억원 이하	71,096	194,780	18	8	2.74
2억원 이하	60,099	182,610	10	3	3.04
3억원 이하	3,643	12,280	3	1	3.37
5억원 이하	1,284	4,472	—	—	3.48
10억원 이하	301	1,088	—	—	3.61
10억원 초과	78	296	—	—	3.80

주: 1)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자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자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에서 주택청약저축 공제금액을 제외한 기준

1.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의 상세

□ 총급여(종합소득) 구간별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율 인상 전후의 1인당 과세표준에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 감소분을 산출한 후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한 결과 총 세수감소분은 2022년 귀속기준 1,188억원으로 추계

- 총급여규모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자의 인원,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자료를 이용하며 한계세율은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서 산출
- 현행 공제율(40%) 기준 1인당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 확대(20%p)에 따른 추가 공제금액 산정
-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
 - 총급여구간별 1인당 추가 세액이 현행 기준 1인당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세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가정

[표 4]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감면액 증가액 (2022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구간	1인당							세수효과 H=G× 인원 ⁴⁾
	현행 ¹⁾ 공제금액	추가 ²⁾ 공제금액	총 공제금액	현행 과세표준	개정안 과세표준	산출세액 변동분	결정세액 변동분	
	A	B	C=A+B	D	E=D-B	F	G ³⁾	
총 계	-	-	-	-	-	-	-	-118,841
1천만원 이하	-	-	-	-	-	-	-	-
1.5천만원 이하	1.2	1.2	2.5	3.1	1.9	-0.07	-0.04	0
2천만원 이하	1.2	0.6	1.8	5.0	4.4	-0.04	-0.01	-21
3천만원 이하	1.5	0.7	2.2	8.9	8.2	-0.04	-0.02	-1,112
4천만원 이하	1.4	0.7	2.1	15.1	14.4	-0.11	-0.06	-8,174
4.5천만원 이하	1.6	0.8	2.4	19.7	18.9	-0.12	-0.07	-6,320
5천만원 이하	1.8	0.9	2.7	23.0	22.1	-0.14	-0.08	-7,634
6천만원 이하	2.1	1.0	3.1	28.3	27.3	-0.16	-0.10	-15,424
8천만원 이하	2.4	1.2	3.6	39.3	38.1	-0.18	-0.14	-21,305
1억원 이하	2.7	1.4	4.1	56.9	55.6	-0.33	-0.33	-23,373
2억원 이하	3.0	1.5	4.6	90.2	88.7	-0.53	-0.53	-31,956
3억원 이하	3.4	1.7	5.1	193.9	192.2	-0.64	-0.64	-2,333
5억원 이하	3.5	1.7	5.2	312.9	311.1	-0.70	-0.70	-894
10억원 이하	3.6	1.8	5.4	583.9	582.0	-0.76	-0.76	-228
10억원 초과	3.8	1.9	5.7	1527.5	1525.6	-0.85	-0.85	-67

주: 1) [표 2]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 기준

2) 현행 공제율을 바탕으로 추정된 1인당 평균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에 개정안의 공제율을 적용

3) 개정안에 따라 산출세액이 감소할 경우 다른 세액공제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결정세액 변동액 중 일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전체 세액공제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2022년 귀속 기준 50.2%)에 따라 비례변동한다고 가정하여 계산

4) 결정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자는 제외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년 귀속소득 기준 감면액 증가액을 바탕으로, 향후 세수효과가 매년 11.9%씩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
 - 주택임대가격 상승에 따라 2022년 공제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예외적인 상승으로 보아 2022년은 제외한 2019~2021년 연평균 증가율을 활용

[표 5] 결정세액 있는 자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 추이: 2019~2022년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19~'21 연평균 증감률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 ¹⁾	9,235	10,146	11,562	16,060	11.9%

주: 1. 결정세액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을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5년 1,488억원, 2029년 2,332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9,431억원(연평균 1,8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안 제52조제4항)	-1,488	-1,665	-1,863	-2,084	-2,332	-9,431	-1,886

나.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액 인상(안 제59조의2제1항)

(1) 대상 인원 수 추정

- (자녀세액공제 신청현황) 2022년 귀속기준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124.0만명, 근로소득세 신고자 219.3만명임
 -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 출산·입양공제로 구성되며, 기본공제는 공제대상 자녀수 별로 금액 차등 지급되고, 출산·입양공제는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둘째 등인지에 따라 차등 지급
-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표 7] 자녀세액공제 신청 인원수

(단위: 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세 신고자	비고: 대상 자녀 연령
2014	1,230,187	3,724,170	20세 이하
2015	1,275,173	3,748,408	
2016	1,323,772	3,752,153	
2017	1,350,161	3,734,969	
2018	1,381,422	3,704,943	
2019	1,167,915	2,847,948	7세 이상 20세 이하 (6세 이하 제외)
2020	1,116,566	2,786,830	
2021	1,213,225	2,740,678	
2022	1,240,221	2,731,7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동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20세 이하 기본공제 적용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9년부터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기본공제 적용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
 - 2023년부터 8세 이상 자녀로 변경('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2년 세법 개정)

[표 8] 자녀세액공제 연혁

자녀세액공제	내용
① (기본-다자녀공제)	('14~'18) 기본공제 적용 자녀(20세 이하) ('19~'22)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 ¹⁾ (20세 이하) ('23)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20세 이하)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24)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20세 이하)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14~'16) 1명당 연 30만원 ('17~)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인 경우, 연 70만원
③ (6세 이하 자녀공제)	('14~'17)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18~) 2018년부터 폐지 ²⁾

주: 1) 2019년 귀속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배제
 2) 2018년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아동수당지급대상(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추가 적용을 폐지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6세 이하를 포함한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수 추정) 현행 자녀세액공제 신청대상에 6세 이하 자녀가 제외됨에 따라,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등을 활용하여 6세 이하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가구수를 추정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수 대비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 비중은 2016 ~ 2018년은 87.7%였으나, 2019년 이후 6세 이하 자녀가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73.2%로 하락
- 2022년 기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6세 미만 포함)가 있는 가구수 추정은 411.2만명으로 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 수(469.1만명)”에 2016~2018년 평균 비중(87.7%)을 적용하여 추계
 -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각각의 인원은 294.4만명, 116.9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인원 대비 근로소득자(중복자 제외시, 71.6%)와 종합소득자(28.4%)의 비율을 적용해 추계
 - 참고로, 2022년 기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7세 이상 20세 이하)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 수(469.1만명)”에 2019~2022년 평균 비중(73.7%)을 적용하여 추계, 약 345.7만명

[표 9]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자녀세액공제 신청 인원수 비중

(단위: 명)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수 ¹⁾ , 통계청 (A)	자녀세액공제 신청 인원수 ²⁾ , 국세청 (B)	(B/A, %)	비고: 대상 자녀 연령
2016	5,572,776	4,777,880	85.7	20세 이하
2017	5,432,246	4,749,664	87.4	
2018	5,272,356	4,738,215	89.9	
2019	5,077,047	3,711,404	73.1	7세 이상 20세 이하 (6세 미만 제외)
2020	4,948,549	3,601,760	72.8	
2021	4,827,184	3,555,605	73.7	
2022	4,690,686	3,530,823	75.3	
2016~2018평균	5,425,793	4,755,253	87.7	
2019~2022평균	4,885,867	3,599,898	73.7	

주: 1)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만18세이하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를 집계 대상으로 함

2) 종합소득세 신고자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수 합산(단, 이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복으로 신고한 인원은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자녀 수별 대상 인원 수 추정) 자녀세액공제 신청 대상자의 자녀 수별 인원수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수별 동 개정안 적용 인원수 추정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별로 세액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자녀인원수별 통계가 산출되는데, 6세이하 자녀가 모두 포함된 2016~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신고 인원 중 자녀수 1인, 2인, 3인이상의 비중을 활용하여 대상 인원수를 추정함

[표 10] 자녀세액공제 신청자의 대상 자녀 수별 비중, 2016~2022

(단위: %)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세 신고자			
	소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이상
2016	100.0	45.2	46.0	8.8	100.0	48.9	45.1	5.9
2017	100.0	46.2	45.2	8.7	100.0	49.4	44.6	6.0
2018	100.0	47.4	44.1	8.6	100.0	50.2	43.8	6.0
2019	100.0	53.2	40.5	6.3	100.0	55.4	40.1	4.5
2020	100.0	53.8	39.9	6.3	100.0	56.0	39.4	4.6
2021	100.0	54.3	39.4	6.3	100.0	55.6	39.6	4.8
2022	100.0	54.0	39.4	6.5	100.0	55.2	39.8	5.0
2016~2018평균	100.0	46.2	45.1	8.7	100.0	49.5	44.5	6.0
2019~2022평균	100.0	53.8	39.8	6.4	100.0	55.6	39.7	4.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과표구간별 인원수 추정) 자녀세액공제 신청 대상자의 과표구간별 인원수 자료를 활용하여, 과표구간별 동 개정안 적용 인원수 추정
- 자녀세액공제의 2022년 기준 과표구간별·자녀수별 인원수 비중을 활용해 추정

[표 11] 과표구간별 자녀세액공제 신고인원수 비중, 2022년 귀속 기준

(단위: %)

과표구간별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세 신고자			
	소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이상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과표 0	5.5	5.2	5.6	7.0	0.0	0.0	0.0	0.0
0~1,400만원	33.6	36.1	30.7	29.4	16.7	21.5	11.4	4.3
1,400~5,000만원	36.4	35.8	37.1	37.5	50.4	47.8	52.7	59.6
5,000~8,800만원	11.8	11.1	12.7	12.5	20.8	19.3	22.6	23.6
8,800만원~1.5억원	6.5	6.1	7.0	6.5	9.0	8.5	9.8	9.0
1.5억원~3억원	3.9	3.6	4.2	4.1	2.5	2.3	2.7	2.8
3~5억원	1.3	1.2	1.4	1.5	0.4	0.4	0.4	0.5
5~10억원	0.7	0.6	0.8	0.9	0.2	0.1	0.2	0.2
10억원 초과	0.3	0.3	0.3	0.5	0.0	0.0	0.1	0.1

자료: 국세청, 「2023 국세통계연보」, 2023.12

(2) 세수효과 추정

-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액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인원수 추정치에 1인당 세수효과를 곱해 추계
-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 1명인 경우 연 1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연 20만원 확대, 자녀 2명인 경우 연 35만원에서 연 75만원으로 연 40만원 확대, 자녀 3명이상인 경우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에서 연 50만원으로 연 20만원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녀수별 1인당 세수효과 추계
 - 이 과정에서 1인당 세액공제금액 추가액과 과표구간별 1인당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둘 중 작은 값을 1인당 세수효과로 추산
 - 1인당 세수효과에 자녀수별·과세표준구간별 인원수 추정치를 곱한 후, 자녀수별 각각의 세수효과를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도출

- 단,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는 중복신고자는 근로소득세 세수효과에서 차감하여 추정함
- 현행 및 개정안 기준 각각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에 따른 각각의 세수감소효과를 도출한 후 양자의 차이를 통해 총 세수효과 도출

[표 12]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효과, 2022년 귀속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과표구간별	근로소득세 세수감소효과			종합소득세 세수감소효과		
	현행 (A)	개정안 (B)	세수감소효과 (C=B-A)	현행 (D)	개정안 (E)	세수감소효과 (F=E-D)
합계	517,078	1,474,352	957,274	220,601	480,664	260,063
과표 0	0	0	0	155	162	6
0~1,400만원	26,631	32,382	5,751	34,800	35,273	474
1,400~5,000만원	289,732	853,067	563,335	109,973	263,321	153,349
5,000~8,800만원	127,269	373,565	246,296	36,397	87,451	51,054
8,800만원~1.5억원	54,510	159,771	105,261	19,905	47,777	27,872
1.5억원~3억원	15,325	44,967	29,642	11,974	28,796	16,821
3~5억원	2,368	6,948	4,579	4,034	9,730	5,697
5~10억원	931	2,730	1,799	2,371	5,739	3,368
10억원 초과	313	922	609	992	2,415	1,422

자료: 국세청

(3) 세수효과

- (세수효과, 귀속기준)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을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향후 5년간 총 5.7조원(연평균 △1.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3]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액 인상의 세수 효과(귀속연도 기준)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세수효과 합계	-11,047	-11,202	-11,358	-11,517	-11,679	-56,803	-11,361
근로소득세	-8,338	-8,436	-8,536	-8,636	-8,738	-42,685	-8,537
종합소득세	-2,709	-2,765	-2,822	-2,881	-2,940	-14,118	-2,824

- (세수효과, 징수기준) 징수 시점을 반영할 경우,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을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향후 5년간 총 6.6조원(연평균 △1.3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부터 시행되어, 2025년 신고분(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징수 기준으로 조정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모두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세수가 2025년 전액 납부되는 것으로 전제(단, 2025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세수 중 일부*가 2025년에 납부되는 것으로 전제)
- * 근로소득세의 2025년 세수효과는 간이세액표 개정('25.2월 예정) 이후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단,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수가 차년도 확정신고시에만 반영)

[표 14]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액 인상의 세수 효과(징수연도 기준)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세수효과 합계	-17,374	-13,410	-11,459	-11,619	-11,782	-65,644	-13,129
근로소득세	-14,665	-10,645	-8,636	-8,738	-8,841	-51,526	-10,305
종합소득세	-2,709	-2,765	-2,822	-2,881	-2,940	-14,118	-2,824

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 인상(안 제59조의4제3항)

(1) 조세지출 실적

- 2022년 귀속 교육세 특별세액공제 규모는 적용인원 257.5만명, 공제세액 8,35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용인원은 증가하고(0.2%) 공제세액은 감소함(△5.4%)

[표 15]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규모 추이(귀속년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적용인원	2,627	2,747	2,203	2,241	2,575	2,490
(증가율)	(3.2)	(4.5)	(△19.8)	(1.7)	(14.9)	(0.2)
공제세액	10,975	10,704	8,194	8,345	8,350	9,598
(증가율)	(△0.4)	(△2.5)	(△23.4)	(1.8)	(0.1)	(△5.4)

주: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각연도 「국세통계연보」(국세청)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2022년 기준 개정안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액공제 증가금액을 추계
- 2022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이후 2026년부터 5년 동안의 추계기간의 세수효과에 대해 분석함
 -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회활동 제약 및 대면소비 기피로 전체 가계소비가 예외적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여, 그 이전 기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 평균 증감률(△1.5%) 적용

(3) 추계 결과

- (2022년 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으로 인상할 경우 관련 세액공제 규모는 1조 6,700억원이며 이에 따라 조세지출액이 현행(8,350억원) 대비 8,350억원 증가하여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6]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개정안 세수효과 추계: 2022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총급여 구간	전체 공제 대상인원	공제 대상금액		1인당 평균(만원)					전체
		전체	1인당 평균 (만원)	세액공제금액			결정 세액	세수효과 H= -min(F,G)	세수효과 I= H×A
				현행	개정안	차이			
				A	B	C=B/A			
전체	2,575	55,668							-8,350
1천만 이하	—	—	—	—	—	—	—	—	—
1.5천만 이하	0	0	33	5	10	5	1	-1	-0
2천만 이하	1	6	43	6	13	6	6	-6	-1
3천만 이하	53	285	53	8	16	8	20	-8	-43
4천만 이하	148	1,389	94	14	28	14	60	-14	-208
4.5천만 이하	128	1,669	130	20	39	20	111	-20	-250
5천만 이하	157	2,307	147	22	44	22	151	-22	-346
6천만 이하	356	5,827	164	25	49	25	220	-25	-874
8천만 이하	663	12,545	189	28	57	28	382	-28	-1,882
1억 이하	451	11,838	262	39	79	39	723	-39	-1,776
2억 이하	543	16,744	309	46	93	46	1,744	-46	-2,512
3억 이하	49	2,002	405	61	121	61	5,315	-61	-300
5억 이하	16	711	431	65	129	65	10,225	-65	-107
10억 이하	6	268	483	72	145	72	21,330	-72	-40
10억 초과	1	77	529	79	159	79	80,490	-79	-12

주: 1. 결정세액은 2022년 귀속 국세통계연보 기준 1인당 결정세액(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2026년 7,874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3조 8,243억원(연평균 7,649억원)으로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1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교육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 인상 (안 제59조의4제3항)	-7,874	-7,760	-7,647	-7,536	-7,426	-38,243	-7,649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박성은	
	이정훈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